2026년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26. 2. 24. 화요일 13:00

ㅇ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ㅇ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8명

- 심의위원: 홍승기(위원장), 김상수, 김성주, 김종원, 김춘식, 백경태, 설지혜, 손수호, 심동섭, 안우신, 안효질, 유재규, 이동국, 이용민, 정경오, 최태경, 한승원, 홍준호 위원

ㅇ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2. 전차(제2025-29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의위원

3. 안건상정 ····· 위원장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방윤섭 전문위원

・의결안건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방윤섭 전문위원

4. 폐회선언 ····· 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

- 전차 회의록(제2025-294회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정 정지 시정권고 회의록 및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2. 의결안건

ㅇ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 □□', '○○○○○○○ △△' 소프트웨어를 판매 중인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

- 회의결과
  · 적법한 방법으로 라이선스가 이전 또는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공인 리셀러가 아닌 자가 ○○○○○○○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안의 경우 단순히 가격만으로는 정품으로 인증된 제품키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호원은 계약 사항인 라이선스 유무를 명료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ㅇ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40개 계정에 대해 20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4주의

계정 정지의 시정 조치를 권고함

- 회의결과

·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안건 20개 온라인서비스의 40개 계정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 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4주의 계정 정지 시정권고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승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5-29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홍승기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보고안건 제1호, 의결안건 제1호 및 제2호, 위원장 호선 사항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함.

- 홍승기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의결안건 제2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o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방윤섭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등을 제시하면서) 금일 심의대상의 시정권고 이행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 '■■■■■■■■ ■■■■', '(주)◆◆◆◆' 등 임. 위원님들께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사항 없음.

- 홍승기 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번~13번은 최초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 '○○○○○○○ □□' 또는 '○○○○○○○ △△' 소프트웨어를 판매 중인 사안임. 지난 전체위원회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가 상이한 상황에서 재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회부하거나 기회부된 안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심의규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였음.

  우선 본건에 대한 심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음. '○○○○○○○ □□'의 경우 지난 두 차례 전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정보라는 사실을 확인할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권리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보호원이 불법성을 추정하여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부

결되어 이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의 경우 합법 시장에서 해당 버전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으며 정식 기술 지원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여 부결해 왔으나, 분과위원회에서 이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SW인 점, 해당 제품 구매 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바탕으로 기회부된 ○○○○○○○ □□ 안건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모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정품 라이선스’ 또는 ‘정품 제품키’ 등으로 홍보하고 있고, ○○○○○○○ △△을 판매하는 안건들의 경우 ‘○○○○○○○ □□과 호환’ 또는 ‘공식 업데이트 지원’이라는 설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 종합적인 논의를 위하여 보호원은 권리자측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도 진행하였는데,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기재된 바와 같음.

자료 및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최초 전체위원회 보고 이후 그 당시보다 라이선스 구조의 복잡성이 발견되어 ‘진정한 라이선스 이전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는바 이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입증책임 관련 판례는 민사 소송사건에 관한 판례로서 본건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참조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위와 같이 증대된 ‘진정한 라이선스 이전의 가능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 라이선스 취득 경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홍승기 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3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저작권법에서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키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러한 게시물들에 대해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B 위원: 대법원은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그 제품키로 인증받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즉, 제품키 자체가 결국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침해 행위와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판매 중인 제품키는 ◍◍◍◍◍◍◍ 사이트에서 인증이 가능함. 계약 위반 등 정상적인 제품키가 아니라면 권리자사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판매하는 제품키가 권리자사의 어떤 장치를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적 보호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나, 이 부분 자체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C 위원: ◍◍◍◍◍◍◍ 사이트에서 ○○○○○○○ 제품은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인증 과정에서 입력한 제품키가 권리자사 시스템 내에서 인증이 가능하다면 제품키 자체는 불법이 아님. 가격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B 위원: 복제 행위의 해석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 나아가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심의대상 게시물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는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 받아 ◍◍◍◍◍◍◍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취지를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C 위원: ◍◍◍◍◍◍◍에서 다운받은 ○○○○○○○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품키가 필요함. 이러한 설치 과정에서 제공된 기능이 풀리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복제되는 것임. 권리자인 ◍◍◍◍◍◍◍의 시스템에서 인증된 것을 다른 명확한 근거 없이 가격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D 위원: 기존 심의 안건들을 보면 제품키도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적절함. 또한 제품키는 적법한 사용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인증해 주는 것이며 제품키 자체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임. 오늘 심의에서는 누군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OEM 등 제품키 일부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 위원: 해당 판결은 적법하게 라이선스와 같이 제품키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라이선스 이전이 수반될 가능성도 상당함.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자사의 판매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용자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F 위원: 라이선스는 결국 계약이고,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호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도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을 것임. 그러나 보호원은 심의대상 게시물들에 대하여 라이선스 유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라이선스 이전이 수반될 가능성도 존재함. 저작권 침해 여부도 명료하지 않고 시정권고 외에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사항들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원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됨.

- D 위원: ◍◍◍◍◍◍◍◍의 대부분 계약에는 라이선스를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라이선스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리 소진 원칙임.

- C 위원: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통 제품키 입력과 동시에 라이선스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음. 이러한 점을 본다면 제품키를 구입했다는 것이 결국 라이선스를 구입한 것과 동일한 의미일 수 있음.

- G 위원: 적법한 구매라면 그러함. 그러나 설치만 할 수 있는 제품키를 다른 수단으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구매하여 설치한다면, 권리자사가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르게 볼 여지는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정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불법이라면 ◍◍◍◍◍◍◍에서 인증이 되지 않아야 함. 인증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호원이 라이선스가 불법인지 혹은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제품키만 구입한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음. 해외에서 제품키를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건 Territory, 즉 계약상의 문제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 H 위원: 제품키 자체를 불법 저작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함. 제품키는 단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품키 자체를 불법 저작물로 보기에는 어려움.

- 박현주 전문위원: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드리겠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판매하는 제품키에 대해 권리자사는 정품은 맞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라이선스가 허여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함. 제품키가 정품이라는 것이 적법한 라이선스 허여와 동일한 의미는 아님. 즉, 판례에도 판시된 바와 같이 적법한 구매로 제품키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까지가 적법한 라이

선스의 허여인 것으로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음.

- D 위원: 금번 심의 결과를 떠나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보면 전체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결과를 분과위원회에서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 구성이 변경됐다는 것만으로 의결 결과를 번복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곤란할 것임.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원칙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I 위원: 유사한 사안에 대해 생각과 상황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의결 결과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안의 경우 불법 또는 적법 이용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고,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라이선스 유무는 권리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사항으로 그들이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D 위원: 제의를 하거나 번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 심의 시 전체위원회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다른 결론을 도출하여 통보하는 것은 피해야 함.

- J 위원: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발견된다면 기존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음. 그러나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특정 분과에서 전체위원회와 다른 결론을 내고, 타 분과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낼 수 없으니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전체위원회의 결의가 분과

위원회를 일정 부분 기속한다는 것을 공유하여야 심의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K 위원: 그 부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됨.

- L 위원: 이 부분은 개별 분과가 아닌 심의위원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전체위원회와 다른 의견으로 회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 전체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위원회 의결을 번복하는 안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M 위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가결 의견이나,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시정권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체위원회의 기조를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홍승기 위원장: 심의대상 안건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더 의견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해당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홍승기 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3번은 가결 8인, 부결 10인으로 시정권고 부결함(가결 8인: B, J, L, N, D, M, O, P 위원/부결 10인: E, C, I, Q, F, G, A, R, H, K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10547호~10559호(순번 1번~13번)는 부결함.”

o 의결안건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47호~86호(순번 1번~40번)는 만장일치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40개 계정에 대해 20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4주의 계정 정지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홍승기 위원장이 제2026-5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4. 17.

위원장 홍승기

위원 김상수

위원 김성주

위원 김종원

위원 김춘식

위원 백경태

위원 설지혜

위원 손수호

위원 심동섭

위원 안우신

위원 안효질

위원 유재규

위원 이동국

위원 이용민

위원 정경오

위원 최태경

위원 한승원

위원 홍준호